

1. 법률

- 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(투자권유준칙 마련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신설)
- 나. 상법 (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및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)
- 다. 상법 시행령 (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 발행 금지)

1. 법률*

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26/7/28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324호, 2026.2.3. 공포, 8.4. 시행)됨에 따라, 해당 투자권유준칙 마련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중소·벤처기업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통한 자금조달 등을 할 때 신고서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
 -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등 일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

2) 주요 내용

-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 마련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범위(제51조 신설)
 - 금융투자업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성 상품인 증권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·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
-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 대상 기준 개선(제120조)
 -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을 개정
 - (기존)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'10억원 이상'인 경우
 - (개정) '30억원 이상'인 경우 등으로 상향
 -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익증권의 비정형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, 해당 수익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정한 보도자료 및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

나. 상법 (2026/7/22 개정 · 2026/7/23 시행)¹⁾

1) 개정 이유

-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,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의무선임 비율을 확대하며,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· 해임 안건과 관련한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 하는 등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이사의 충실의무(제382조의3 제2항 신설)

- (개정)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,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며,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함
 - (기존)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

□ 독립이사의 선임(제542조의8)

-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‘독립이사’로 변경하고, 의무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(기존) 4분의 1에서 (개정) 3분의 1로 상향 조정

□ 감사위원회의 구성(제542조의12)

- (개정)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선임 · 해임에 있어, 최대주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함
 - (기존)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· 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· 해임 시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100분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

□ 전자주주총회(제542조의14)

- (개정)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,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하여 개최하도록 함

1) 제3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364조, 제368조,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

- (기존)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

다. 상법 시행령 (2026/7/21 개정 · 2027/1/1 시행)²⁾

1) 개정 이유

- 「상법」 개정(2025.7.22. 공포, 2026.7.23. 및 2027.1.1. 시행)에 따라, 독립이사의 결격기간 정비 및 등기 근거 마련, 전자주주총회의 의무 개최 대상, 개최요건 및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전자적 방법에 의한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 발행 금지(제22조 및 제23조)
 -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의 발행 대상 주식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을 제외하고,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·상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을 삭제
 -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 「상법」 개정에 따름
- 전자적 방법에 의한 휴면회사의 영업신고 도입(제28조)
 - 종전에는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를 서면으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,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도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
- 독립이사 결격기간 정비(제34조 제5항 제7호)
 -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이 ‘독립이사’로 변경됨에 따라, 다음의 경우를 독립이사의 결격기간으로 함
 - 해당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6년을 초과
 - 해당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재직한 기간과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는 경우
-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등기 근거 마련(제34조의2 신설)
 - 상장회사가 독립이사를 선임하여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‘독립이사’의 명칭으로 등기

2) 제31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1호, 제34조의 제목, 같은 조 제1항 제3호 단서, 같은 조 제5항 제7호, 제34조의2 및 제3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 시행하고,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시행

□ 전자주주총회의 의무 개최 대상 상장회사(제42조의2 신설)

-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상장회사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함

□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요건(제42조의3 신설)

-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전자주주총회의 소집·운영에 관한 직무 수행의 기준·절차 및 전자주주총회의 개최·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함

□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의 요건(제42조의6 신설)

- 상장회사의 위탁을 받아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은 전자주주총회의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, 전자주주총회의 개최·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 및 사고 발생 시 업무 연속성 유지에 필요한 보완설비를 갖추도록 함

□ 전자주주총회의 운영(제42조의7 신설)

- 상장회사는 해당 상장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전자주주총회의 출석을 신청한 주주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
-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에 참여하려는 주주의 질의·발언의 횟수·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함

□ 전자주주총회의 출석 방법(제42조의8 신설)

-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나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되, 이에 따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상장회사가 마련한 방법에 따라 주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